

<p>○도시계획사항: 준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 ○주민 의견청취 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서구 화곡동 1064, 1065, 1074, 1076 일대 22,499㎡의 준주거지역과 화곡동 1051, 1052, 1063, 1074, 1076 일대 37,306㎡의 일반주거지역을 각각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, ○아울러 이 상업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(안)은 이 지역이 신월지구 중심지로서 상업지역으로 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타당한 계획이라 사료되어, ○용도지역 변경과 지구지정안에 동의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 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: 5px 0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75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 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3. 주요요지 ○위 치: 강서구 화곡동 342, 343, 897 일대 ○내 용 ·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33,237㎡) ·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33,237㎡) 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 ○주민 의견청취 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서구 화곡동 342, 343, 897 일대 33,237㎡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(안)으로 사료됨. ○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상 신정지구 중심지역으로서 중심지역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요구된 지역임.</p>	의안 번호	75	<p>5. 심사결과 보 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: 5px 0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76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 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3. 주요요지 ○위 치: 강서구 등촌동 505, 648, 640 일대, 염창동 274 일대 ○내 용 ·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 (42,434㎡) ·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11,251㎡) 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 ○주민 의견청취 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서구 등촌동 505, 648, 640 일대 및 염창동 274 일대 42,434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용도변경 예정지역중 11,251㎡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(안)으로서, ○이 지역은 자치구에서 정한 등촌삼거리 생활권 중심지로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○그러나 이 지역은 공항로 연변지역으로서 양천구 목동 606-18 일대도 생활권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어,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목동지역도 준주거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 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: 5px 0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77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	의안 번호	76	의안 번호	77
의안 번호	75						
의안 번호	76						
의안 번호	77						

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                 ○ 위 치 : 강서구 화곡동 776, 781 일대                  ○ 내 용                  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 (17,106㎡)                 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17,106㎡)                  ○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      ○ 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                 ○ 강서구 화곡동 776, 781 일대 17,106㎡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 또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(안)으로서,                  ○ 이 지역은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목동사거리 생활권 중심지로서,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(안)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                  ※ 이 지역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접경지역으로서 양천구 중심지에도 강서구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요구됨.</p> <p>5. 심사결과                  보 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: 10px auto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78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                 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                 3. 주요요지                  ○ 위 치 : 강서구 내발산동 719, 723, 강서구 화곡동 1006, 1013 일대                  ○ 내 용                  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 (27,059㎡)                 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27,059㎡)</p>	의안 번호	78	<p>○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      ○ 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                 ○ 강서구 내발산동 719, 723과 화곡동 1006, 1013일대 우장산역 생활권 중심지인 27,059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, 아울러 같은 지역을 생활권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(안)이나,                  ○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보면, 우장산 전철역 도로에 따라 장방향으로 준주거지역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정한 도시계획 변경기준 모델과 맞지 않아 재검토가 요구됨.</p> <p>5. 심사결과                  보 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: 10px auto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79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                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                 3. 주요요지                  ○ 위 치 : 성북구 성북동 330 일대                  ○ 내 용                  · 면적 : 1,905,818㎡ → 1,928,680㎡(증 22,862㎡)                  · 도시계획사항 : 전용주거지역, 풍치지구                  ·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: 7건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                 ○ 성북구 성북동 330-1 외 16필지의 토지 22,862㎡를 인접 북악산 자연공원에 편입시켜 현재의 공원면적 1,905,818㎡를 1,928,680㎡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                  ○ 공원결정 예정지는 '77.7.9. 북악산자연공원에 편입되었다가 '78.10.20. 공원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으로서 현지 임상으로 보나 자연공원과 인접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고 서울시의 공원면적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                 ○ 이 지역은 일부지형이 대지를 조성하고 지목도 대지로 되어 있고 또 공람공고중</p>	의안 번호	79
의안 번호	78				
의안 번호	79				